#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## 1. 심사 경과

- 제 출 : 2007. 1. 12.(사천시장)
- 회 부: 2007 1. 12.(총무위원회, 의안번호 제6호)
- 상 정: 2007. 1. 23.(제111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의결)

### 2. 제안설명 요지(총무과장 엄정기)

## 가 제안이유

행정자치부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관련 시·군·구 조직개편에 따라 주민생활지원서비스기능 강화와 한기기구 기한만료에 따른 직제개편에 맞추어 공무원 정원을 정비하여 행정조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.

# 나 주요내용

- 1)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변동 없음(안 제2조 제1호 및 제2호)
  - 가) 지방공무원 총수 : 856명 (현행 유지)
    - 집행기관의 정원 : 840명 (현행 유지)
    - o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16명 (현행 유지)
- 2) 기관별 · 직급별 정원의 조정(안 별표)
  - 본 청 : 456명 ⇒ 439명
    - 일반직 : 4급(3 → 3명), 5급(18명 → 19명), 6급(98명 → 91명), 7급(116명 → 115명), 8급(94명 → 94명), 9급(40명 → 40명)
    - 기능직 : 6급(4명 → 5명), 7급(12명 → 11명), 8급(18명 → 16명), 9급(33명 → 25명), 10급(18명 → 18명)
    - 정무직 : 1명 → 1명, 별정직 : 6급상당(1명 → 1명)
  - 의회사무국 : 16명 ⇒ 16명
    - 일반직 : 4급(1명 → 1명), 5급(2명 → 2명), 6급(3명 → 3명), 7급(1명 → 1명), 8급(3명 → 3명)
    - 기능직 : 8급(2명 → 2명), 9급(4명 → 4명)

## ○ 직속기관 : 132명 ⇒ 132명

- 일반직 : 4급(2명 → 2명) 5급(6명 → 6명), 6급(19명 → 20명), 7급(35명 → 35명), 8급(20명 → 20명), 9급(2명 → 2명)
- 기능직 : 7급(1명 → 1명), 9급(4명 → 4명)
- 별정직 : 6급상당(11명 → 11명), 7급상당(3명 → 3명)
- 지도사 : 29명 → 29명

#### ○ 사업소: 57명 ⇒ 74명

- 일반직 : 5급(5명 → 4명), 6급(11명 → 12명), 7급(10명 → 15명), 8급(10명 → 12명), 9급(3명 → 4명)
- 기능직 : 6급(1명 → 0명), 7급(1명 → 2명), 8급(3명 → 5명) 9급(4명 → 12명), 10급(9명 → 8명)

## ㅇ 읍: 22명 ⇒ 22명

- 일반직 : 5급(1명 → 1명), 6급(5명 → 5명), 7급(6명 → 6명), 8급(4명 → 4명), 9급(4명 → 4명)
- 기능직 : 8급(1명 → 1명), 10급(1명 → 1명)

#### ○ 면: 102명 ⇒ 102명

- 일반직 : 5급(7명 → 7명), 6급(28명 → 28명), 7급(21명 → 21명), 8급(15명 → 15명), 9급(19명 → 19)
- 기능직 : 9급(6명 → 6명). 10급(6명 → 6명)

## ○ 동:71명 ⇒ 71명

- 일반직 : 5급(6명 → 6명), 6급(6명 → 12명), 7급(28명 → 24명), 8급(17명 → 15명), 9급(8명 → 7명)
- 기능직 : 10급(6명 → 7명)
- 3) 한시정원 연장(안 부칙 〈2001. 9. 15〉 제2항 제1호)
  - 복식부기 전담인력: 2명(7급 1명, 8급1명)
  -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전담인력 : 1명(7급 1명)
  - O 소나무재선충방제 전담인력 3명(7급1, 8급1, 9급1)
  - O 존속기한 : 2006년 12월 31일 → 2008년 12월 31일까지

#### 다 관계법령

- O 「지방자치법」
- O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」
- O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관련 「2단계 시군구 조직 개편지침」
- O 표준정원제 시행 등 기구정원규정 시행규칙 중 개정규칙 시행지침

## 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송군호)

- O 개정조례안은 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인해 기관별,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
- 총액인건비 시행계획에 맞도록 정원 총수를 856명으로 현행과 같이 변동이 없도록 하여 본청 정원을 456명에서 439명으로 17명을 감하고, 사업소의 정원을 57명에서 74명으로 17명을 증원하고, 그 외 기관은 현행과 같으며, 직급별 정원도 현행과 같이 변경이 없도록 조정한 것으로 확인됨.
- O 조례를 개정함으로서 주민생활서비스 기능 강화 및 행정조직 운영에 효율성이 도모될 것으로 판단됨.
-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- 5. 토론요지 : 없음
- 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- 7. 소수의견: 없음